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22. 1. 17.(월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송천, 사무관 한다송, 주무관 이현수 • ☎ (044) 201-4006, 4009, 4010	
	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	담 당 자	• 처장 정연권, 차장 이종명 • ☎ (054) 811-3528, 3529	
	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	담 당 자	• 처장 박병인, 대리 김지열 • ☎ (042) 615-4110, 4120	
	신공항 하이웨이(주)	담 당 자	• 부장 김성태, 차장 김현우 • ☎ (042) 560-6060, 6063	
	서울문산 고속도로(주)	담 당 자	• 팀장 이장용, 과장 박재홍 • ☎ (031) 927-2600, 2604	
보 도 일 시		2022년 1월 1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,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

- 18일부터 택배사업자 모집 · 21일 사업설명회... 3월부터 조성 -

-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, 총 5.3만m²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, 한국철도공사(사장 나희승), 서울문산고속도로(주)(대표이사 정대창), 신공항하이웨이(주)(대표이사 전영봉)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(4개소, 1.8만m²) 및 철도 역사(4개소, 3.5만m²) 유휴지로,
 -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.
-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(80점 이상)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.

- 특히,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,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.
-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, 중소·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.
-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**1월 18일(화)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.**
- 아울러, **1월 21일(금)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** 사업대상 부지 설명,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“물류업체가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, 이번 공공 유희부지 공급이 도시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다송 사무관(☎ 044-201-40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(공급부지) 고속도로, 철도 등 유후부지 8개소(5.3만㎡)

명 칭	위 치	가용면적(㎡)	관리기관
양노3교 하부	경기 화성	2,811	한국도로공사 (www.ex.co.kr)
강릉IC 4,5,6교 하부	강원 강릉	6,100	
장도교 하부	인천 서구	1,186	신공항하이웨이(주) (hiway21.com)
서문15교 하부	경기 고양	7,500	서울문산고속도로(주) (www.sm-hi.co.kr)
이원역 인근	충북 옥천	6,077	한국철도공사 (www.korail.com)
용문역 인근	경기 양평	3,505	
점촌역 인근	경북 문경	5,875	
舊 남원역 인근	전북 남원	19,509	

□ (도입시설) 중소 규모 택배분류장

□ (선정절차) ① (공고) 관계기관 동시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, 합동 설명회 시행 → ② (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(80점 이상 적격) 후 적격업체 대상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*

* 개찰 결과, 최고 사용요율을 다수의 업체가 제안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중 ‘개발계획’ 점수가 높은 업체를, ‘개발계획’ 점수도 동일한 경우 ‘운영계획’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

** 다만, 업체 선정방식은 소관기관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조정가능

○ 관계기관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합동평가 실시

- 공동평가단은 각 공급기관의 사업담당자 1인(총 4인), 통합물류협회 및 물류분야 전문가 등 6인 이상으로 구성